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87
----------	-------

발의연월일 : 2022. 8. 17.

발의자 : 백종현 · 최춘식 · 유경준  
정운천 · 황보승희 · 강기윤  
박덕흠 · 김학용 · 하영제  
장동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

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처분”을 “처분(제37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u>판매한</u> <u>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u> <u>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u> <u>로 부과한다.</u></p> <p>1. (생 략)</p> <p>2. 제23조제2호·제3호·제5호 ·제6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u>처분</u>,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p> <p>3.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 ----- ----- ----- ----- <u>해당 건</u> <u>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u> <u>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u> <u>부과할 수 있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처분(제37조제1항에 따라 2개</u> <u>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u> <u>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를</u> <u>포함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p>

	<u>야 한다.</u>
	<u>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u>
	<u>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u>
	<u>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u>
<u>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u> ----- ----- -----.
<u>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④ 제3항에</u> ----- ----- ----- ----- ----- ----- ----- ----- -----.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u>④ (생략)</u>	